

제주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3가단2083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10. 30.

판 결 선 고 2023.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79,215원과 그중 15,625,938원에 대하여 202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등의 보증 아래 2002. 8. 9. D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4. 8. 9., 이자 연 9.19%, 연체이자율 최대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D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22. 12. 19. 기준 원고의 채권액은 원금 15,625,938원, 이자 26,753,277원 합계 42,379,21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2,379,215원과 그중 원금 15,625,938원에 대하여는 이자계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최종변제기인 2013. 8. 9.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채무자인 D이 2012. 10. 19.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한 가운데 2013. 1. 1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3. 7.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D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기재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전에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임재남